

梅山 禮說에 대한 一考察

—『梅山先生禮說』 「通禮」를 통해 본 梅山의 宗統 傳承에 관한 인식—

李 泳 俊*

<目 次>

I. 緒論	
II. 『梅山先生禮說』 및 「通禮」에 대하여	2. 嫡庶에 대한 구별
III. 宗統 傳承의 諸 問題에 대한 梅山의 觀點	3. 本生家에 대한 차등
1. 嫡長子 중심의 계승	4. 次養·侍養에 대한 비판
	IV. 結論

<국문 초록>

본고는 李鎭玉이 편찬한 『梅山先生禮說』 「通禮」의 綱 가운데에 宗法, 出後, 次養, 侍養, 攝祀 등의 항목을 통해 洪直弼의 宗統 傳承에 대한 인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程朱性理學을 國是로 삼았던 조선조에서 종통의 전승에 관한 예법인 ‘중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 질서였는바, 이는 매산의 예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매산은 家系의 승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次子が 아닌 嫡長子로 종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옛법을 고려하여 차자에게 傳重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 嫡庶의 구별에 있어서는 嫡子와 庶子의 구분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륜 관계를 배제하지 않아서 서자가 부친과 적자인 아우의 喪을 주관

* 해동경사연구소 연구원 / swimhero@hanmail.net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서자가 집안의 嫡統을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族子를 양자로 들이기보다는 핏줄이 직접 닿아 있는 서자를 후사로 세우는 것이 국법에서도 허락하는 바이고 禮經에도 근거가 있는 바이며 人情에도 부합하는 바임을 들어서 그 타당함을 밝혔다. 本生家에 대해서는 그 屬稱과 예법을 所後家와 엄격히 구별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다만 인정을 참작하여 本生父母의 墓道文字 등에서는 자신을 ‘不肖從子’라고 칭하여 여느 伯·叔父母와 다름을 보이면서도 본생부모에 대한 사사로운 정을 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次養과 侍養에 대해서는 세속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법에 없는 것임을 밝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사양은 길러준 인정을 고려하여 사양손의 당대에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매산은 예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 항상 ‘經’이라는 원칙을 우선하면서 人情과 實情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인 예법을 고수하는 가운데에 人情을 참작하여 ‘變通’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는 經의 범주 안에서 알맞은 길을 찾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종통 전승에 관한 예설 저번에 일관되게 깔려 있다.

【주제어】 洪直弼, 李鎭玉, 梅山先生禮說, 宗統, 變通, 嫡長子, 本生家, 次養·侍養

I. 緒論

본고는 『梅山先生禮說』 「通禮」를 통해 梅山 洪直弼의 宗統 傳承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산은 1776년(영조52) 6월 13일 申時에 漢城의 鑄字洞에서 태어나 1852년(철종3) 7월 17일 酉時에 鷺湖의 蘆漪精舍에서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났다. 초명은 兢弼, 자는 伯應·伯臨, 본관은 南陽이며 시호는 文敬이다. 평생 出仕하지 않고 학문 강학에 힘써 近齋 朴胤源(1734~1799)¹⁾

문하에서 그 학맥을 계승하고 이를 후대에 전한 老論 洛論의 핵심사상가이자 문인교육자이다. 학문은 박윤원 외에도 老洲 吳熙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대표적인 제자로는 全齋 任憲晦와 重菴 金平默 등이 있다.

程朱性理學을 國是로 삼았던 조선조에서 『家禮』가 갖는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宗法’, 즉 종통의 전승에 관한 예법으로,²⁾ 이는 『가례』의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通禮」의 祠堂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당이란 祖先의 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한 집안의 모든 의례 一冠·昏·喪·祭가 행해지는 중심이다. 朱熹는 冠·昏·喪·祭를 행하기에 앞서 종법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가례』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종법’은 程頤의 ‘宗子法’을 계승한 것이다. 정이는 종자법이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하였으며³⁾ 주희 역시 이를 옹기 여겨 『가례』에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였다. 「家禮圖」에 있는 ‘大宗小宗圖’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다

1) 매산의 스승으로 자는 永叔, 본관은 潘南, 시호는 文獻이다. 1792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평생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여 金昌協·李緯·金元行의 학통을 계승한 嫡傳이 되었으며, 다시 문하의 매산에게 학통을 전수해 申應朝·任憲晦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였다.

2) 『性理大全書』 권19, 『家禮』, 「通禮·祠堂」, “楊氏復曰 … 若夫明大宗小宗之法, 以寓愛禮存羊之意, 此又『家禮』之大義所繫, 蓋諸書所未暇及, 而先生於此尤拳拳也…”

『性理大全書』 권19, 『家禮』, 「通禮·祠堂」, “黃氏瑞節曰 … 『家禮』以宗法爲主, 所謂非嫡長子不敢祭其父, 皆是意也. 至於冠·昏·喪·祭, 莫不以宗法行其間云.”

3) 『二程遺書』 권6, 『近思錄』 권9, 「治法」, “管攝天下人心, 收宗族, 厚風俗,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 收世族, 立宗子法.”; 『二程遺書』 권15, 「入關語錄」, “宗子法壞, 則人不自知來處, 以至流轉四方, 往往親未絕不相識. 今且試以一二巨公之家行之, 其術要得拘守得, 須是且如唐時立廟院, 仍不得分割了祖業, 使一人主之.”

시 말해 종법은 모든 예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며 모든 예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주성리학적 사회의 기초 질서인 셈이다. 이는 매산의 예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매산은 박윤원의 학문을 계승하였는데 박윤원의 淵源은 漢湖 金元行, 陶菴 李緯, 農巖 金昌協, 尤菴 宋時烈, 沙溪 金長生까지 소급되는바 매산은 노론 낙론의 嫡傳이 된다. 매산은 경학과 성리설은 물론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하였는데 禮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 현재 초간본 『매산집』에는 권5부터 권26까지 스승, 선배, 知舊, 門人, 親族, 子姪 등에게 보낸 편지 1,00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禮에 관한 언급이 많다. 이러한 매산의 禮에 관한 언급은 후대에 『매산선생예설』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예설을 따로 발췌하여 하나의 책으로 정리한 것은 매산의 학맥 가운데 스승 박윤원과 제자 임헌회·전우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여타 학맥보다 禮說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매산의 예설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鄭吉連이 유일하다.⁴⁾ 정길련은 매산 예설의 기본 관점과 變禮 의론의 특징을 논하여 禮學史的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매산 예설은 예의 각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시험적으로 정주성리학적 예법의 핵심인 ‘중통 전승’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우선 『매산선생예설』의 서지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책의 내용 중에 「通禮」편을 통하여 그 안에 드러나는 매산의 중통 전승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梅山先生禮說』 및 「通禮」에 대하여

매산은 近齋 朴胤源의 학문을 전수받았는데 박윤원은 漢湖 金元行的

4) 鄭吉連, 「梅山 洪直弼의 禮說研究」, 慶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8.

학문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매산의 학문은 全齋 任憲晦(1811~1876)에게 이어졌고 또 이는 良齋 田愚(1841~1922)에게 이어졌다. 이것이 19세기 洛論의 정통 학맥이다. 이 학맥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후에 그 후손 또는 문인에 의해 禮說書를 편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근재예설』은 박윤원의 손자 朴雲壽(1792~1841)와 질손 朴岐壽(1774~1845)의 주도하에 편찬되었고⁵⁾ 『매산선생예설』은 門人 李鎭玉⁶⁾의 주도하에 편찬되었으며 『전재선생예설』은 문인 田愚에 의해 편찬되었고⁷⁾ 『간재선생예설』은 문인 權純命에 의해 편찬되었다.⁸⁾ 특히 『전재선생예설』의 總目은 冠昏禮, 通禮, 喪禮, 祭禮, 國禮, 國恤로 구성되어 있고 『간재선생예설』의 總目은 冠昏禮, 通禮, 喪禮, 祭禮, 國禮, 國服變禮, 國哀, 雜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두 책은 이진옥이 편집한 『매산선생예설』의 체재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진우는 이진옥과 함께 『매산선생예설』 교정 작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험이 『전재선생예설』의 편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산선생예설』(이하 『예설』로 약칭함)은 매산이 남긴 글들에 산재되어 있는 禮에 관한 수많은 言說을 이진옥이 수습해 분류하여 만든 책이다. 본래 매산의 禮說을 한 데 모아 책으로 만들 것을 발의한 사람은 임헌희였다.⁹⁾ 그는 매산의 遺集에서 직접 약간 책의 예설을 抄錄하였는데

-
- 5) 金允貞, 「18세기 禮學 연구 -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89-91.
 - 6) 생물년 未詳. 본관은 全義, 자는 士蘊이며, 孤潭 李純仁(1533~1592)의 10세손이다. 『孤潭逸稿』 권5, 家狀, 「孤潭逸稿跋」 현재 병인년(1866, 고종3)에 木活字로 인행된 초간본(규장각古3428-322)에는 신해년(1851, 철종2) 윤월과 임자년(1852, 철종3) 4월에 이진옥에게 보낸 매산의 답서가 실려있다.
 - 7) 『全齋先生禮說』, 「跋」, “右全齋先生禮說四篇, 卽愚之所編輯也… 乙巳復月旣望門人田愚謹跋.”
 - 8) 『良齋先生禮說』, 「跋」, “右良齋先生禮說六卷, 門人權純命編輯, 陳泰鉉印行, … 庚午季夏門人吳震泳謹書.”
 - 9) 『禮說』 권7, 「跋」, “先師梅山先生易篋後二十年, 全齋任先生詢及同門曰: ‘先師禮說尙未出, 斯文闕典也.’ 於是手抄若干冊於遺集中, 未克成書而歿, 後十有五

책을 이루지 못하고 1876년(고종13)에 66세로 졸하였다. 이후 15년 뒤에 이진옥이 임헌회가 초록했던 것을 가져다가 原稿를 참고하고 續集의 내용을 더하여 5책으로 만들었다. 기축년(1889) 봄부터 임진년(1892) 겨울까지 자신의 벗 전우와 함께 讎校하여 거의 삼분의 일을 산삭하고 겨우 4책을 얻었다. 그리고 계사년(1893, 고종30)에 印刊한 것으로 보인다. 金洛鉉(1817~1892)¹⁰⁾의 序文에 의하면 이 작업에는 매산의 嗣孫 洪用觀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서문을 쓸 당시 -신묘년(1891, 고종28) 3월 下浣-에는 5책이라고 하였다.¹¹⁾

이진옥이 쓴 『예설』의 「凡例」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1. 선생께서 예를 논하신 설이 全書에 흩어져 있어서 대번에 수집하기 어려웠다. 다만 병인년(1866, 고종3) 印本 27책과 내가 무오년(1858, 철종9)에 편집한 續集 5책에 기재된 書牘의 問答에다가, 동문들이 선생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적에 기록한 語錄의 諸條를 더하여서 책을 이루었으니, 綱目 총 76개이고 목이 939조이다.¹²⁾

1. 星田錄은 바로 그 원집 가운데의 주고받은 예설들인데 미처 나누어 엮어서 목을 세우지 못하였다. 尹致中이 抄錄한 紙片은 종류별로 모으고자 하였으나 또한 疏漏함이 많다. 내가 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대략 沙溪 선생의 『疑禮

年, 鎮玉不揆汰哉之誅, 遂取其抄錄者, 參以原稿, 增以續集, 分門彙列, 各以類從, 凡輯五冊, 自己丑春爲始, 與田友愚屢加讐校, 以至壬辰洞, 見刪幾至三之一而僅得四冊. …”

10) 본관은 光山, 자는 定汝, 호는 溪雲이다. 아버지는 돈녕부 도정 在晉이며, 어머니는 숙부인 청송심씨로 부사 應奎의 딸이다. 1859년(철종11) 진사시에 합격하여 정릉 참봉이 되고 현감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文敬이다.

11) 『禮說』, 「序」 “… 先生門人李鎮玉士蘊與先生嗣孫用觀得老, 哀輯先生禮說爲五冊, 來請校讐, 且使爲序弁卷. …”

12) 『禮說』, 「凡例」 “一. 先生論禮之說, 散在全書, 遽難蒐輯, 只就丙寅印本廿七冊及鎮玉戊午所編續集五冊所載書牘問答, 益以同門立雪時語錄諸條, 用成一書, 綱凡七十有六, 目爲九百三十九條.”

問解』와 尤菴 선생의 『經禮問答』의 차서를 본떠 각각 門目を 세우고 종류대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였다.¹³⁾

즉 이진옥은 병인년에 초간된 『매산집』 27책¹⁴⁾과 자신이 직접 무오년에 편집한 속집 및 동문들이 평소 기록했던 매산의 어록을 바탕으로 『예설』을 편찬한 것이다.

‘星田’은 임헌회가 지냈던 곳이다. 임헌회는 66세이던 1876년(고종13) 2월에 公州 三岐의 星田으로 이사하고¹⁵⁾ 이해 11월 5일에 이곳에서 졸하였는바,¹⁶⁾ ‘성전록’은 이진옥이 발문에서 임헌회가 편집하고 있었다고 한 매산 선생의 예설로 추측된다. 이진옥은 자신의 가산을 기울여 활자를 사용해 100여 본을 인출하여 同志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고 하였다.¹⁷⁾ 현재 『예설』은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표적인 소장처로 들 수 있는데 모두 木活字 印書本이며 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소장처 및 장서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禮說』, 「凡例」 “一. 星田錄卽其原集中往復禮說, 而未及分編立目. 尹致中所抄紙片, 擬以類聚, 而亦多疏漏. 鎮玉不揆僭踰, 畧倣沙溪『疑禮問解』、尤菴『經禮問答』次序, 各立門目, 彙分類從, 以便考閱.”

14) 현재 초간본 『매산집』은 目錄 2권, 原集 53권으로 도합 28책이다.

15) 『鼓山集』 권10에 「星田開基告文」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제목 밑에 ‘丙子二月’이라는 原註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星田에 집터를 닦은 것으로 보인다.

16) 『良齋集前編』 권17, 「全齋任先生神道碑銘」 “... 「丙子」十月寢疾, 遺戒喪葬無得從厚. 以十一月五日巳時, 考終于公州星田之正寢, 壽六十六. ...”

17) 『禮說』 권7, 「跋」 “... 於是傾家貲, 用活字, 印出百餘本, 與同志共焉. ...”

<表-1> 『梅山先生禮說』의 대표적 소장처 및 서지 사항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 중앙연구원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일본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청구 기호	奎 12655-v.1-4	古1325-6-v.1-4 古複1325-6	A5E71(1~4)	668.3841	韓1-52	고서(유당) 390.9 홍직필 매.목 -1~4 고서(목용실) 390.9 홍직필 매.목 -1~4
판본 사항	印書體木 活字	木活字	印書體木活 字本	목활자본 (방전사자)	목활자본	木活字本
책권수	7卷4冊	7卷4冊	7卷4冊	7卷4冊: 挿圖	7卷4冊: 挿圖	7卷4冊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 :21.4×19.7 cm 10行 20字 註雙行	四周單邊 半葉匡郭 :21.8×14.8cm 10行 20字 註雙行	四周單邊半 郭 21.8×15cm 10行20字	四周單邊 半郭 21.3×14.9cm 有界, 10行20字	四周單邊 半郭 21.3×14.8cm 有界, 10行20字	四周單邊 半郭 21.5×14.7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판심	上花紋魚 尾	上花紋魚尾	上二葉花紋 魚尾 30.9×19.6cm	上下向二葉花紋 魚 尾 30.8×19.9cm	上下向二葉花紋魚尾 30.8×19.8cm	上下向二葉花 紋魚尾, 30.9×19.8cm

이외에도 이화여대(181.214-홍89-1-4), 경기대(경기null-K117370-1), 국회(古395-ㅎ257口), 충남대(經.禮類-雜禮-564) 도서관에 7권 4책의 목활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筆寫本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청구기호 古1215-2이다. '李珍字'라는 印文이 있으며, 欄外 상단에 朱墨으로 주석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적은 '찌[箋]가 붙여진 곳도 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있는 李鎭玉의 跋文 다음 장에 '後學完山李珍字 書于泉坪書堂'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진옥이 범례에서 金長生의 『의례문해』와 宋時烈的 『경례문답』의 차서를 본떴다고 하였는데 완전히 동일함을 추구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부분만 따른 듯하다.¹⁸⁾

『예설』의 총목차는 다음과 같다.

<表-2> 『梅山先生禮說』 總目

卷數	篇名	綱	
卷1	冠昏禮(凡4條)	1	冠禮
		2	昏禮
		3	服中冠昏
		4	回昏禮(附)
	通禮(凡5條)	1	祠堂
		2	宗法
		3	出後
		4	次養
		5	侍養
	卷2	通禮(凡9條)	1
2			班祔
3			晨謁
4			朔望參
5			俗節
6			薦新
7			有事告
8			深衣制度
9			雜禮

18) 이상은 鄭吉連, 「梅山 洪直弼의 禮說研究」, 慶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8, pp.19-23.

卷3	喪禮(凡22條)	1	易服
		2	立喪主
		3	訃告
		4	襲
		5	飯含
		6	魂帛
		7	銘旌
		8	小斂
		9	成服
		10	承重
		11	本生服
		12	外黨服
		13	夫黨服
		14	養父母服
		15	妾服
		16	殤服
		17	制服
		18	追喪
		19	稅服
		20	師服
		21	饋奠
		22	朝夕哭

卷4	喪禮(凡17條)	1	聞喪
		2	竝有喪
		3	吊慰
		4	擇地
		5	治葬
		6	啓殯
		7	朝祖
		8	發靱
		9	窆
		10	題主
		11	追後立主(附)
		12	成墳
		13	葬時諸節
		14	葬後諸節
		15	反哭
		16	虞祭
		17	卒哭
卷5	喪禮(凡5條)	1	祔
		2	小祥
		3	大祥
		4	禫
		5	吉祭

卷6	喪禮(凡7條)	1	遞遷
		2	埋主
		3	改葬
		4	居喪雜儀
		5	心喪雜儀
		6	喪中行祭
		7	服中雜儀
	祭禮(凡5條)	1	時祭
		2	忌祭
		3	生忌
4		墓祭	
5		榮墳(告榮凡筵附)	
卷7	國禮(凡1條)		
	國哀(凡1條)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례」는 14개의 綱과 455개의 目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목은 다음과 같다.

<表-3> 『梅山先生禮說』 「通禮」의 綱目

綱	目	綱	目
祠堂 (凡14條)	1 正寢	晨謁 (凡5條)	1 代行晨謁
	2 龕制		2 父在母喪入廟後晨謁
	3 始立廟者當設四龕		3 喪中廢晨謁
	4 不祧位不在世數		4 同宮之喪不廢晨謁
	5 祧位與祖禰位非父子則間一龕		5 祧位晨謁
	6 家廟遷奉時口告	朔望參 (凡9條)	1 齋宿非止齋一夜
	7 祠堂移安當告由再設酒果不告		2 參禮晨謁兼行
	8 祠漏移安		3 閏月朔望參
	9 奉安輿次次第		4 望日或用酒
	10 慰安偷竊		5 望日設茶不出主

	11	失神主改題告由		6	朔望參及有事告與忌同日(祥禫值朔日并論)		
	12	妻廟神主火		7	喪在異宮行朔望參		
	13	祭器燕器不宜通用		8	總成服日行參		
	14	除夕拜廟		9	國葬前家廟朔望只焚香再拜		
宗法 (凡5條)	1	長子雖病廢死不可傳重於次子	俗節 (凡4條)	1	俗節有扶陽義		
	2	長子廢疾者死立後當否		2	時食在第一行		
	3	妾母世祭之非		3	百種不行俗節		
	4	庶子承嫡		4	臘日薦廟之義		
	5	移宗祝	薦新 (凡4條)	1	薦新物品		
1	沙溪長子尤菴伯兄不立後之疑	2		單薦用生			
2	與受者俱存乃可立後	3		喪中薦新			
3	出後小宗者移繼大宗	4		卒哭前不行薦新			
出後 (凡24條)	4	大宗立後姊妹爲姑婦	有事告 (告喪附○ 凡14條)	1	特贈卽日告廟		
	5	族子年長於族叔則雖大宗不可爲後		2	恩侑告		
	6	不計兄妻存亡立兄之後		3	告科		
	7	出後者前後母		4	付軍銜告由		
	8	兄弟子告君		5	告官榮不可遲待○肅命日公服謁廟		
	9	無君命者還本宗		6	伸冤告廟		
	10	繼後未及禮斜		7	伸冤告由		
	11	告立後		8	宗子三年內先祖贈職告由		
	12	繼後者自告		9	哭夭不可告榮		
	13	立後者告廟與服色		10	生子告		
	14	立後先告廟次告几筵及成服		11	抱子而拜		
	15	父祖喪中立後當先成父服		12	告喪		
	16	宗子立後攝孫告由		13	支孫喪亦告		
	17	本生父廟告		14	婦人不朝本家廟當告喪		
	18	本生不稱考妣		深衣之制 (行衣附○ 凡10條)	1	布綿麻通用	
	19	本生父母祖父母稱號及服			2	深衣尺度不取稱身	
	20	出後者屬稱			3	續衽	
	21	出後者於本生親稱不肖從子			4	裁破之非	
	22	出後者不當主本生喪			5	覆縫在內	
	23	立後後立主			6	衣前小幅	
	24	追後立後改題神主			7	小帶	
	次養 (凡1條)	1			次養非禮	8	大帶再緝
	侍養 (凡2條)	1			侍養非禮	9	庶人着深衣
		2			侍養子奉祀止祭當代	10	行衣
攝祀 (凡27條)	1	代宗子攝主	雜禮 (凡31條)	1	書院位次尙齒		
	2	非移宗則舍次孫而用季子攝主		2	謁先賢祠板		

	(攝祀節次并論)			
3	宗子父子俱沒宗子之母死宗子之弟與子所主之疑	3	毀鄉社者位版埋于墓所	
4	庶子主喪從子主廟	4	待儒賢	
5	庶兄主嫡弟喪且攝行先祀	5	道伯是宗族則只序親	
6	本生兄未終制而死過房攝主練祥祝	6	方伯繡衣當下階迎升堂拜	
7	本生祖主過房孫之喪竝攝先祀	7	資窮代加施於本生弟姪	
8	弟與出繼子在弟當攝兄喪	8	受賜祭儀節	
9	喪中立後總功之親爲之告廟	9	庶類賤贈	
10	長子死無後次子攝主喪祭	10	綽楔必施於宗家門閭	
11	祖死嫡孫無子而亡嫡孫之弟以本服攝祀	11	父兄在謫赴舉當否	
12	父出亡祖喪攝主	12	邦慶日不當停私家哭	
13	攝祀者告由	13	路中遇先生當拜朋友當相揖	
14	攝宗事告兄	14	夫妻拜	
15	攝祀之由告廟	15	兄揖弟之祠墓	
16	權攝傍題	16	大功未爲親上壽	
17	攝祀誤稱孝當改題	17	豎石前後告	
18	攝祀出主不改屬稱	18	喪畢哭墓之非	
19	婦人攝祀	19	繼母七八寸稱號	
20	立嗣前廢四時正祭	20	前母繼母黨無屬稱	
21	無主人而攝祀則當一獻無祝	21	內外從屬稱	
22	主本生喪祭祝	22	姨姊妹爲從嫂者稱號服制	
23	出後者攝本生祀當三獻	23	姨從爲姑夫	
24	攝祀虞卒祔祭祝稱號	24	新婦不當見夫之姊妹姑姊之夫	
25	攝祀者祔廟告辭	25	庶弟	
26	攝主行祔祝	26	待庶人	
27	攝祀一廟中兩攝主不成事理	27	諱小字當否	
班祔 (凡8條)	1	無後班祔當告諸位	28	嫌名不諱
	2	祔東壁下	29	同名改名
	3	祔遷	30	以改名不可改題神主
	4	叔父神主墓而入祔改題叔母合櫨	31	孤子不更名
	5	嫂服盡入廟踰月而合櫨		
	6	新主入廟名節不宜別設		
	7	祔位改題亦告		
	8	別廟奉本生親祭止於孫		

『예설』에서 ‘통례’라는 門目を 세운 것은 『家禮』에 「通禮」가 있기 때문이다. 「통례」에 대해 朱熹는 “이 편에서 드러낸 것은 모두 이른바 집

안을 소유한 자가 날마다 사용하는 常禮로서 하루라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此篇所著, 皆所謂有家日用之常禮, 不可一日而不修者.]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통례’가 집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례』에서는 「통례」를 중시하여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앞에 배치하고 있다.

『예설』은 『가례』의 구성과는 약간 다르게 「冠昏禮」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통례」, 「상례」, 「제례」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례』의 「통례」는 祠堂, 深衣制度, 司馬氏居家雜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설』의 「통례」는 祠堂, 宗法, 出後, 次養, 侍養, 攝祀, 班祔, 晨謁, 朔望參, 俗節, 薦新, 有事告, 深衣之制, 雜禮 등의 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례』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예설』 자체가 知舊·門人들과 왕복한 편지에서 예에 관계된 것들을 초록하여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례』의 ‘통례’의 범주를 더 확장시키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祠堂 등의 ‘綱’ 아래에는 보다 세부적인 항목인 ‘目’이 있는데, 이는 편찬자가 각 해당 조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특히 「통례」의 綱 가운데에 종법, 출후, 차양, 시양, 섭사 등의 항목은 종통의 전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각각의 조문마다 매산의 종통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종법, 출후, 차양, 시양, 섭사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종통 전승의 제 문제에 대한 매산의 관점을 간략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宗統 傳承의 諸 問題에 대한 梅山의 관점

종통의 전승은 程朱性理學的 예법을 따랐던 조선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私家에서는 家系의 承繼 및 재산의 상속이 직결되어 있

고 王家에서는 王位의 승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집안의 가계를 嫡長子가 승계하도록 하는 宗法(宗子法)은 일종의 장자상속법이며, 祖先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권한은 가계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사의 주관자이자 종통의 전승자인 宗子는 그 친족을 통솔하며, 친족은 종자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다. 종통 전승의 문제가 私家뿐만 아니라 王家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顯宗 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禮訟¹⁹⁾에서도 잘 드러난다.

매산 역시 종통 전승의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예설』 「통례」의 宗法, 出後, 次養, 侍養, 攝祀 등의 각 세부 항목에서 이에 대한 매산의 일관되고 확고한 견해가 잘 드러난다. 이에 아래에서는 종통 전승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매산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1. 嫡長子 중심의 계승

宗法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바로 後嗣를 세우는 문제이다. 宗家에 본래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적장자가 없어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 一族 중에서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게 한다. 여기에는 종통을 전하는 문제가 첨예하다. 적장자가 후사 없이 죽으면 죽은 적장자를 위하여 양자를 들여 후사로 세워서 그에게 傳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적장자의 아우에게 전중해야 할 것인지를 문제가 대두 되는데, 매산은 종통의 계승에 있어서 적장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위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19)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에 孝宗이 승하했을 때와 갑인년(1674, 현종15)에 효종의 비 仁宣王后가 승하했을 때에 慈懿大妃의 服制 문제를 두고 벌어진 두 차례의 예송으로, 南人은 효종을 仁祖의 嫡子로 보아서 그에 맞는 복제인 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西人은 庶子로 보아서 暮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정권 교체를 초래할 정도로 당시 조정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長子가 비록 병에 걸려 廢死하더라도 次子에게 전중해서는 안 된다】

統序가 매우 중하니, 어찌 惡疾로 죽었다고 하여서 차자에게 종통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이미 자식이 있으면, 질병이 옮겨짐을 염려하여 倫을 폐하고 絶嗣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慎獨齋께서 ‘장자가 비록 병으로 폐해졌다 라도 차자에게 전중할 수는 없다. 또한 장자에게 아들이 있으면 어찌 전중할 수 없다고 하여 차자에게 奉祀하도록 하겠는가.’라고 말씀하였으니,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의론입니다. 禮라는 것은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한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嫡統을 범함을 헤아리지 않고 마음대로 주고 빼앗는다면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經을 지킬 뿐, 嗣子의 향후 존망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²⁰⁾

【장자로서 廢疾이 있는 자가 죽었을 때에 후사를 세움의 當否에 대하여】

장자가 폐질이 있어서 宗廟의 일을 주관할 수 없으면 비록 正(嫡長)·體(血統, 父子之間)라고 하더라도 또한 전중할 수 없으니, 이는 『儀禮』 「喪服」에 대한 賈公彥의 疏에서 말한 바입니다. 그러나 폐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만약 생식능력(人道)이 있어서 부인을 얻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폐질이 있다고 하여 전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그를 위하여 후사를 세워 주어서 종묘의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충명하지 못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면 다만 차자에게 전중해야 할 뿐입니다. 이른바 ‘次養’으로 말하면 禮에 근거가 없으니 禮家에서 알 마가 아닙니다.²¹⁾

20) 『禮說』 卷1, 「通禮宗法」, 【長子雖病廢死 不可傳重於次子】 “統序甚重, 曷可以死於惡疾而移宗於次子乎? 死者既有子, 則未可慮其染瘡而廢倫絶嗣也. 慎齋有云: ‘長子雖病廢, 不可傳重於次子, 且長子有子, 則豈謂不可傳重, 而以次子爲奉祀?’ 斯不易之論也. 禮者, 所以別嫌明微也. 不揆干統, 任自與奪, 則幾何不天壤易位乎? 此等處守經已矣, 嗣子之向後存亡, 未須論也.” -答任憲晦-

21) 『禮說』 卷1, 「通禮宗法」, 【長子廢疾者死立後當否】 “長子有廢疾, 不堪主宗廟, 則雖正體亦不傳重, 是爲喪服疏說. 而廢疾亦有分數, 若有人道, 可以娶婦生子, 則不可以廢疾而不傳重, 雖無子而死, 當爲之繼絶, 用承宗事. 若生而不慧, 不克成人, 則只宜傳重於次子已矣. 至若所謂次養, 於禮無稽, 非禮家之所知也.” -答任憲晦-

위의 두 조목은 폐질이 있는 장자에 대해 어떻게 전중해야 하는지와 그 사후에 후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전중이란, 喪·祭나 宗廟의 중한 책임을 적장자에게 전하는 것이다.²²⁾ 종법에서는 적자와 차자를 구별하여 적자가 죽었을 경우 차자에게 종통을 전하지 않고 바로 적자의 아들 곧 嫡孫에게 전하였는데, 이를 조부의 입장에서는 ‘전중’이라고 하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承重’이라고 한다. 『의례』 「상복」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斬衰三年을 입는다.[父爲長子.]”라고 하였고, 그 傳에,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위에서 正과 體가 되고 또 장차 전중하기 때문이다. 서자²³⁾가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조부를 잊지 않기 때문이다.[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²⁴⁾라고 하였는데, 가공언의 소에 “그 父·祖가 위에서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하고 자기가 또 뒤에서 적

22) 楊天宇는 “宗廟의 주인의 지위를 重이라고 한다.[宗廟主的地位叫做重.]”라고 설명하였다. 『儀禮譯註』, 「喪服」, pp.301.

23) ‘서자에 대해 鄭玄은 “서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아우인데, 庶라고 말한 것은 멀리 분별함이다.[庶子者, 爲父後者之弟也. 言庶者, 遠別之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賈公彥의 소에 “서자라고 한 것은 멀리 분별함이다라고 한 것은, 서자는 妾子를 부르는 말인데,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은 衆子임에도 이제 같이 서자라고 한 것은, 장자와 멀리 분별하기 위하여 첩자와 호칭을 같이한 것이다.[云‘庶子者遠別之也’者, 庶子, 妾子之號, 嫡妻所生第二者, 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也.]”라고 설명하였다.

24) 이에 대해 彭林은 “아버지가 적장자를 위해 복상할 적에 왜 삼년을 해야 하는가? 적장자는 아버지의 正體가 되어서 종묘의 가운데에 나열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禰廟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가 서자라면 자기의 적장자를 위해 삼년상의 복을 입을 수 없으니, 그들이 父祖의 宗廟를 계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였고, 楊天宇는 “아버지가 왜 적장자를 위해서 삼년상의 복을 입어야 하는가? 적장자가 할 아버지를 이은 正體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자기가 또 장차 종묘의 주인 자리를 그에게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 본인이 서자라면 그의 적장자를 위해서 삼년상복을 입을 수 없으니, 이는 그의 적장자가 할 아버지를 이은 正體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상은 彭林의 『儀禮全譯』, 「喪服」, pp.375-376, 楊天宇의 『儀禮譯註』, 「喪服」, pp.300-302.

자로 계승하기 때문에 ‘위에서 正과 體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장차 전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종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이는 이러한 두가지 일이 있어야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있는 것이다. [以其父祖適適相承於上, 己又是適承之於後, 故云正體於上. 云又乃將所傳重者, 為宗廟主是有此二事, 乃得三年.]”라고 하였다. 가공언은 ‘적자로 3대를 계승한 경우’에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비록 승중이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四種이 있다. 첫째는 正이며 體이지만 전중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는 적자가 폐질이 있어서 종묘의 일을 주관할 수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전중은 하였으나 정도 아니고 체도 아닌 것이니 이는 庶孫으로 후사를 삼은 경우이고, 셋째는 체이면서 正이 아닌 것이니 이는 庶子를 후사로 삼은 경우이고, 넷째는 正이면서 체가 아닌 것이니 이는 적손을 후사로 삼은 경우이다. [雖承重, 不得三年有四種, 一則正體不得傳重, 謂適子有廢疾, 不堪主宗廟也. 二則傳重非正體, 庶孫爲後是也. 三則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 四則正而不體, 立嫡孫爲後是也.]”라고 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지 않는 네 가지 경우를 들었다.

가공언의 소 중에 ‘적자가 폐질이 있어서 종묘의 일을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매산은, 폐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자에게 전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폐질이 있는 장자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 폐질이 그 자식에게 유전되거나 전염되었다고 해서 후사를 폐해서는 안 되며, 설사 폐질이 있는 장자가 자식 없이 죽었더라도 장자를 위하여 후사를 세워서 전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공언이 말한 四種說의 오류를 지적하여 송시열이 옳다고 보았던 가공언의 소의 잘못까지 지적하였다.²⁵⁾

25) 『儀禮』, 「喪服」의 賈公彥의 疏에서 承重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 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四種說’이다. 禮訟 당시에 송시열은 嫡子끼리 祖父子 삼대를 계승해야 그 아들을 위해 삼년상의 복을 입을 수 있다고 보아 이 사중설을 근거

흔히 장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아우에게 전중하게 하는데, 이를 兄亡弟及²⁶⁾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산은, 형망제급이란 부친과 조부의 命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명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은 적장자를 위해 후사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선현들 중에서도 적장자의 아우, 즉 차자에게 전중한 경우가 있었는데 매산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사계가 장자를 위해, 우암이 백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

사계가 장자를 위해, 우암이 백형을 위해 양자를 세우지 않고 次適에게 전중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嫡妻와 첩에게 모두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國典에 상고해보면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법은 매우 엄하니 禮經으로 질정해보았을 때 당연히 양자를 세워야 합니다. 또 형망제급의 예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장가든 자에게 후손이 없다고 하여 후사를 끊어버린다면 적자로서의 중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현의 가법이라고 하여 본받아서는 안 될 듯하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²⁷⁾

로 들어서 仁祖의 계비인 慈懿大妃가 孝宗을 위해 期年服을 입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매산은 吳熙常의 의견을 받아들여 ‘適承三世’의 설은 가공언이 제멋대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喪服’의 경문은 父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가공언은 손자까지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매산은, 굳이 네 가지를 찾아보자면 ‘正이고 體이지만 傳重할 수 없는 廢疾長子, 傳重할 수 있고 正이지만 體가 아닌 繼後한 長子, 傳重할 수 있고 體이지만 正이 아닌 庶子爲後와 妾子承適’인 경우에만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하였다. 매산 역시 처음에는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嫡嫡相承三世’ 설이 옳다고 여겼으나 경전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견해를 바꾸었다고 한다. 『梅山先生禮說』 권3, 「成服」, “繼稱者亦當服長子斬, 賈疏四種之謬”

- 26) 형이 죽고 그 아들이 없는 경우 아우가 형을 대신해서 宗統을 잇는 예이다. 『增補文獻備考』 권86, 「禮考 立後」 고대에 殷나라에서 이 예를 썼기 때문에 ‘殷及’이라고도 한다.
- 27) 『禮說』 권1, 「通禮 出後」, 【沙溪長子尤菴伯兄不立後之疑】 “沙溪之爲長子, 尤菴之爲伯兄, 不立其後而傳重於次嫡何哉? 嫡妾無子則稽國典而不悖, 宗法至嚴則質禮經而當然. 且殷及之禮, 當用於未成人而死者, 若既娶者以無後而絕其嗣, 則惡在其爲適子之重哉? 恐不當以大賢家法而效之, 未知如何.” -答鏡湖李

【양자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후사를 세울 수 있다】

옛법에는 반드시 양자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후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계 선생의 장자 내외가 모두 죽어 양자를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사를 세울 수가 없어서 신독재에게 전중하였습니다. 신독재는 또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아우 참판공 金槃의 장자에게 전중하였습니다.²⁸⁾

첫 번째 조목은 매산이 1804년(순조4) 1월에 李宜朝(1725~1805)에게 답한 편지이고, 두 번째 조목은 임헌희에게 답한 편지인데 편지를 보낸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임헌희의 생년이 1811년(순조11)임을 고려하면 첫 번째 조목이 前說이 되고 두 번째 조목이 後說이 됨을 알 수 있다.

김장생은 45세가 되던 해인 1592년(선조25) 5월에 장자 金隲과 子婦 陰城朴氏가 倭賊에게 해를 당하였다.²⁹⁾ 그리고 송시열은 21세 되던 해인 1627년(인조5) 3월 6일에 백형 宋時燾가 26세의 나이로 胡亂에 殉死하였고 형수 金氏는 같은 해 11월 29일에 죽었다.³⁰⁾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적

公宜朝-

- 28) 『禮說』 권1, 「通禮出後」, 【與受者俱存乃可立後】 “古法必有與者受者, 然後乃可立後. 沙翁長子夫妻俱沒, 無受之者, 故不得立後, 而傳重於慎齋矣. 慎齋又無嫡子, 故仍傳重於其弟參判公槃之長子.” -答任憲晦-
- 29) 『沙溪全書』 권43, 附錄, 「年譜」, “「壬辰」五月間長子隲及婦喪. 長子隲在京避賊, 東出至忘憂里, 與妻陰城朴氏俱遇賊被害. 且失三歲兒, 庶弟燕孫以嶺伯金辟幕裨, 擊倭力戰而死. 時先生坐衙, 輒覺終日悲楚, 疑其有凶, 後乃果然.”
- 30) 『宋子大全』 권201, 「伯氏學生公墓表」, “公, 贈贊成諱甲祚之子, 贈判書諱應期之孫, 其氏族, 具篆判書公墓, 母郭氏. 公壯健有氣節, 愛人好施, 常慕關、張之義, 至其殺身處, 必掩卷流涕. 年廿六, 遊關西, 虜至, 猝還數十百騎, 奮身獨戰, 竟被害, 實天啓丁卯三月六日也. 贊成公募人尋尸, 歸葬判書公墓左百步許, 又其左數十步, 伯父諱欽祚葬在焉. 配金氏, 新羅金傅王之裔, 父忠義衛聲振, 性貞淑. 至是哀毀甚至, 其十一月廿九日, 遂卒, 卽合葬焉. 無子, 吾兄弟與金氏弟壽等, 懼久遠毀傷其墳, 共立此石而略記之, 嗚呼悲哉! 時崇禎庚子四月日, 弟時烈謹識以書.”

『宋子大全』 附錄 卷2, 「年譜」, “「天啓」七年丁卯三月, 哭伯氏學生公, 學生公

장자를 위해 양자를 들여 후사를 세우지 않고 다음 적자[次適], 즉 아우에게 전중하였다. 첫 번째 조목을 보면 매산은, 형망제급은 ‘적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법’이라고 하여 김장생의 장자와 송시열의 백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장생 집안의 전중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조목을 보면, 매산은 양자를 들여 후사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자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옛법을 들고 있다. 김장생의 경우는 장자 내외가 모두 죽어서 양자를 받을 자가 없게 되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남인 신독재 金集에게 전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차자에게 전중하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일 뿐, 적장자에게 전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장자 중심으로 종통을 전승해야 한다는 매산의 견해는 여러 조목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예컨대 「통례」 攝祀 ‘代宗子攝主’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매산은 支子が 宗子, 즉 적장자를 위해 攝主하는 것은 經이 아니라고 하였다. 혹 宗子が 후사 없이 죽었는데 그 후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도 宗子の 叔父가 그 喪을 대신 주관[攝主]할 수는 있지만 改題와 遞遷은 집안의 宗子が 아닌 이상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숙부가 忌祭와 墓祭를 행할 때에는 單獻을 올리고 축문이 없이 행해야 할 뿐, 三獻을 올리고 축문이 있는 정식 제사는 宗子를 위해 양자를 들여 후사를 세운 다음에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³¹⁾

諱時熹，是歲往省長姊于姊兄尹公燭雲山官次，適值虜難，姊兄率軍赴戰，公出偵賊，路遇虜騎，射殪數賊而遇害。”

- 31) 『禮說』 권2, 「通禮·攝祀」, 【代宗子攝主】 “以支子而爲宗子攝主者，非經也。然宗子死而無嗣，又靡所於繼絕，則爲叔父者，安可不以亡從子題主乎？是爲禮窮則變，蓋不得已也。宗子喪畢，禮當改題遞遷，旣無主人，則非所可施。夫改題遞遷，非攝祀者所可議到者也。忌墓祭當單酌無祝，待立嗣子，追行給祀，準禮改題，斯爲守經。若以立後之淹遲享祀之不備，而遽行宗子之禮，則不幾近于干

2. 嫡庶에 대한 구별

매산은 嫡長子 중심의 종통 계승과 함께 기본적으로 嫡子와 庶子(妾子)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구분을 두어서 서자가 적자의 正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妾母에 대해 대를 이어 제사 지내는 잘못】

‘첩모는 대를 이어 제사 지내지 않음[妾母不世祭]’은 이미 禮經의 定論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제사는 그 아들에서 그쳐야 하고, 아들이 죽으면 어미의 신주를 묻어야 하니, 비록 손자와 증손이 있더라도 또한 감히 대를 이어 제사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庶類가 禮防이 없어서 분수를 범하고 예절을 능멸하니, 그 신주를 체천함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였습니다. 神明은 禮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으니, 하물며 참람한 경우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³²⁾

여기에서 매산이 말한 ‘예경의 정론’이란 『禮記』 「喪服小記」의 “자모와 첩모는 대를 이어 제사지내지 않는다.[慈母與妾母不世祭也.]”라고 한 부분을 가리킨다. 자모는 첩의 자식을 길러준 庶母로, 자식이 없는 첩과 어미가 없는 첩의 자식을 부친이 명하여 모자의 관계로 만들어 준 것이다.³³⁾ 즉 자모와 첩모에 대한 제사는 모두 그 아들의 세대까지만 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첩의 자식인 庶類들이 이러한 예경의 본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어미와 자신이 嫡統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신주를 체천하기까지 하였다. 본래 체천이란 4대 이내의 자손 중에 향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最長房이 奉祀孫에게서 代數가 다한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받드

統乎? 禮者, 所以別嫌明微, 聖哲之所兢兢也. 重宗一統, 絕覬覦而防禍變, 萬世不易之道也. 苟體斯義, 則詎或遷就於其間哉?” -答任憲晦-

32) 『禮說』 권1 「通禮·宗法」, 【妾母世祭之非】 “妾母不世祭, 既有禮經定論, 則當祭止其子, 子死而埋母之主, 雖有孫曾, 亦不敢世祭. 而庶類不有禮防, 犯分凌節, 至於遞遷而極矣. 神不歆非禮, 況僭乎? …” -答任憲晦-

33) 『禮記集說』 권4, 「曾子問」, “『集說』妾之無子者養妾子之無母者, 謂之慈母.”

는 것으로 이 최장방이 죽으면 그 다음 최장방이 모셔 가서 제사 지내는데, 자손 중에 4대손이 다 죽은 뒤에는 그 신주를 땅에 묻는다. 서류들이 첩인 어미의 신주를 체천을 하는 행위는 곧 자신들이 적통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正統을 침범하는 干統이 되는바 매산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禮가 아니라고 보았다.

적서에 대한 엄격한 구분은 다른 여러 조목에서도 보인다. 예컨대,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경우에도 자신의 생모를 庶母로 보아서 庶母服(總麻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體를 이어서 감히 사사로운 정을 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⁴⁾ 또 서자의 자식은 승중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妾祖母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고 기년복을 입어야 하며, 喪이 끝나면 첩조모의 신주를 埋安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⁵⁾

그러나 매산은 서자를 무조건 배척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서자도 집안의 적통을 계승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다.

【서자가 承嫡한다】

大宗은 높은 統으로 종족을 수합하는 것이니,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支子로 대종의 뒤를 잇는 것인바, 이는 대종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小宗은

34) 『梅山集』 권18, 「答洪生-在周 乙未二月」, “庶子爲父後者, 爲其所生母, 服以庶母者, 以承父之體, 不敢申私也. 雖則服總, 三月中當盡居喪之禮, 出入當服布深衣蔽陽子, 除服即受心制, 服墨笠墨帶練布直領, 以終二十七月之期而卽吉, 是爲不可易者也. 子之於母, 情雖無窮, 禮所不許, 則情亦不克自遂, 祇伸心喪三年, 以報生育之恩而已.”

35) 『梅山集』 권18, 「答洪生-在周 乙未二月」, “庶子之子父死後, 不爲妾祖母代服三年者, 以無重之可承也. 承重者, 承祖之重也. 不受祖之重者, 詎可承妾祖母之重乎, 妾祖母豈有可傳之重乎? 以故尤翁有云: ‘凡孫之爲祖父母三年, 是承重故也, 今其祖母是其祖之妾而已, 則其孫豈可謂承重而服三年乎?’ 不惟尤翁成訓乃爾, 明陵之世, 有朝令申禁, 曷敢有越? 祇當服本服墓已矣, 喪畢而埋主, 是爲妾母不世祭之義也.”

아들이 없으면 끊어도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후사를 세우지 않으니, 소종은 대종에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종에는 후사를 세우고 소종에는 후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禮의 큰 법이 됩니다. 후세에는 소종뿐만 아니라 支庶에 있어서도 후사를 세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는 진실로 끊어진 대를 계승하고 망한 것을 보존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가 아닙니다.

禮에 적자가 없으면 적손을 세우고 적손이 없으면 서자를 세우니, 서자는 嫡妻와 첩의 소생을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근래 풍속에는 소종과 지서에게 첩의 아들이 있는데도 族子를 세워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은 비단 『經國大典』의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세운다.”라는 조문에 위배될 뿐 아니라, 血胤을 버리고서 소원한 사람을 취하는 것이니, 이것이 천리와 인정에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경국대전』의 立后 조에 “적장자에게 첩의 아들이 있더라도 아우의 아들을 후사로 삼길 원하면 들어준다.”³⁶⁾ 라는 글이 있으니, 자식이 있으면서 양자를 세우는 자들이 이 글을 끝어다가 자신들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친조카가 있으면 괜찮지만 친조카가 없으면 불가하고, 대종과 소종의 입장이라면 괜찮지만 지서라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栗谷(李珣), 愼獨齋(金集), 南冥(曹植)과 鄭崎菴(鄭弘溟), 李貞翼(李澆)이 모두 『경국대전』을 따라서 첩자로 적통을 잇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의로운 일 이 아니라면 여러 현자들이 이것을 하였겠습니까.

집사께서는 지자이니 宗嗣의 중함이 없고 또 양자로 삼을 만한 친조카가 없으며, 근간에 또 먼 집안에서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려 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날의 득실을 거울삼아서 자신의 판단으로 제량하되 위로는 당대의 왕이 정한 제도를 따르고 아래로는 지나간 先哲들이 이루어 놓은 법을 계승하여 첩의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후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고를 만나서 그 일의 마땅함을 잃지 않음이 될 것입니다.

근세에 ‘첩의 아들은 承嫡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귀친의 분수에 너무 얽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자로서 적자를 이으면 이미 免賤하여 귀하게 된 것이고, 또 아버지가 대부라면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귀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간은 天性이니 다만 이치를 따라 대처해야 할 뿐입니다. 벼슬길의 통하고 막힘을 헤아리고 문호의 높아지고 낮아짐을 계산하는 것으로 말하면 모두 利害를 계교함에서 나온 것이니, 올바른 의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찌 가통을 계승하는 문제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³⁷⁾

36) 이 말은 『경국대전』의 ‘입후’ 조가 아니라 ‘奉祀’ 조에 보인다.

대종은 적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서 그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계통이고, 소종은 적장자를 제외한 지자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 나가게 하는 방계의 계통이다.³⁸⁾ 대종은 매우 중요시되어 만약 絶嗣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양자를 들여 후사를 세워서 그 종통을 이어 나가게 하였는데, 이에 반해 소종은 질사되게 되더라도 굳이 후사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후세에는 소종뿐만 아니라 支庶까지도 자신들의 대를 잇는 후사를 중시하여 대가 끊어지게 되면 무조건 후

37) 『禮說』 권1, 「通禮·宗法」, 【庶子承嫡】 “大宗者, 尊之統而收族者也, 不可以絕, 故以支子後大宗, 是重大宗也, 小宗無子, 可以絕者也, 故不爲之立后, 小宗不可擬大宗, 故後大宗而不後小宗, 是爲禮之大經也, 後世則不惟小宗, 雖支庶罔不爲之立后, 固出於繼絕存亡之義, 而非古禮也, 禮無適子則立適孫, 無適孫則立庶子, 庶子通妻妾所生而言也, 近俗小宗與支庶, 亦有有妾子, 而立族子爲后者, 斯事也, 非直有違於國典適妾俱無子然後立后之文, 舍血胤而取疎屬, 其於天理人情, 安乎否乎, 大典立后條, 有適長有妾子, 願以弟之子爲后則聽之文, 斯爲有子而繼后者所援證, 然有親姪則可, 無親姪則不可, 在大小宗則可, 在支庶則不可, 以故栗谷、愼齋、南冥及鄭崎菴、李貞翼, 咸遵國典, 用妾子承嫡, 苟其非義, 而群賢爲之哉, 執事既是支子, 無宗祧爲重, 且乏親姪可取以爲子, 間又取養疎屬, 而不遂其願, 則宜鑑前事之得失, 裁以在我之權衡, 上遵時王之定制, 下述往哲之成法, 待到側室子成立, 立以爲嗣, 是爲遭變事而不失其宜也, 近世爲不可承嫡之論者, 屑屑於貴賤之分, 而庶以承嫡則已免賤而爲貴矣, 父爲大夫則亦可謂子以父貴矣, 父子天性也, 祇宜順理而處之而已, 至若商進取之通局, 計門戶之尊卑者, 皆出於計較利害, 非義之正也, 詎可論於繼體之地者乎?” - 答朴汝受宗喜-

38) 대종과 소종에 관한 설명은 『禮記』 「喪服小記」와 「大傳」에 보이는데 「상복 소기」에는 “별자는 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한 자는 大宗이 되고 그 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小宗이 된다. 오세가 되면 읍기는 종이 있으니 高祖를 계승한 자이다.[別子爲祖, 繼別爲大宗, 繼禰爲小宗. 有五世而遷之宗, 其繼高祖者也.]”라고 하였고, 「대전」에는 “별자는 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한 자는 宗이 되고 그 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小宗이 된다.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라고 하였다. 본래 宗法에서는 諸侯의 嫡長子 이외의 아들을 別子라고 칭하는데, 이 별자를 계승해 나가는 嫡長子의 계통이 百世不遷의 大宗이 되고, 적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각각 그 아들이 계승해 나가는 小宗이 된다. 이 예법은 반드시 제후가 아니더라도 卿, 大夫, 士, 庶人이 모두 준수하였다.

사를 세우는 풍습이 만연하였는데 매산은 이러한 것이 古禮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본래 예법에는 적자가 없으면 적손을 세우고, 적손이 없으면 서자를 세웠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자는 적장자를 제외한 정실과 첩의 아들들을 통틀어 말한 것으로, 이 예법에 의하면 첩의 자식 역시 얼마든지 집안의 적통을 계승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첩에게서 난 친아들이 있어도 이를 외면하고 친족의 적자를 데려와 후사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첩의 자식은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그가 집안의 적통을 계승하면 집안의 위상이 떨어지고 아울러 그 후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살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산은 첩에게서 태어난 친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의 적자를 후사로 삼는 것은 결국 利害를 따지는 데에서 비롯된 행위로 ‘바른 義’가 아니라고 논박하였다.

매산은 ‘서자가 적통을 계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첩의 자식이 천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이전의 여러 선현들 역시 첩의 자식으로 집안의 적통을 계승하게 한 사례가 존재하며, 적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첩의 자식은 免賤되는데,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엄연히 핏줄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첩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양자를 들여서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며 天理로 보나 人情으로 보나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첩의 자식이 있더라도 아우의 아들[弟之子]로 후사를 삼기를 원하면 들어준다’라는 법전의 조문 중 ‘弟之子’를 곡해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매산은 이 경우 역시 자기의 ‘친조카’여야만 가능하고 또한 대종과 소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논파하였다. 이는 첩의 자식도 집안의 적통을 계승할 수 있으며, 당시 국법과 본래의 예법 및 혈윤과 인정을 가지고 보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요컨대, 매산은 적서의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무조

건 ‘첩의 자식은 천하다’, ‘집안의 일에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법, 예법, 인정을 가지고 접근하여 서자 역시 적통을 계승할 수 있으며 집안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통례」攝祀 ‘庶子主喪 從子主廟’ 조목과 ‘庶兄主嫡弟喪 且攝行先祀’ 조목에도 드러나는데, 앞의 조목에서는 망자에게 적자가 없고 서자만 있으면 廟事는 從子가 주관하더라도 망자의 喪事는 서자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³⁹⁾ 뒤의 조목에서는嫡子인 아우의 상사를 庶兄이 주관할 수 있고 또한 先祀를 섭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⁰⁾

3. 本生家에 대한 차등

出後한 자, 즉 양자로 나간 자가 본생가에 있어 어떻게 호칭하고 어떻게 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매산은 所後家와 본생가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禮說』 권2, 「通禮攝祀」, 【庶子主喪 從子主廟】 “舍庶子而以從子題主, 縱出於嚴嫡庶之義, 而恐乖禮經親不同親者主之之文. 愚意喪則以庶子主之, 廟事則從子主之, 一以存嫡庶之防, 一以遵親主之訓, 并行而不悖, 未知意下如何. 未立後之前, 凡係先廟之事, 所謂攝主者, 只是單獻無祝而已. 雖則從子主之, 亦何妨俾庶子而主三年之喪乎? 禮亦有喪祭異主之文故也. 喪畢入廟之後, 則不可以攝祀而行三獻, 用異於群位, 亦俾從子主事, 恐不害理.” -上潁西任丈-

40) 『禮說』 권2, 「通禮攝祀」, 【庶兄主嫡弟喪 且攝行先祀】 “奔喪曰親同長者主之, 不同親者主之, 所謂親者, 不分嫡庶而言也. 舍親兄弟而取遠兄弟, 情有所不忍, 禮有所不愜. 愚意則庶兄主喪題主則當云故弟而不敢書名, 祝辭當用敢昭告謹以等字恐宜, 只言故弟, 太無分別, 亦似簡忽, 誠如老洲所教, 而嫡弟之稱, 既無經據, 未宜朔用, 既云庶兄, 又下敢謹等字, 又改亡字爲故字, 則亦可見隆殺也, 其庶兄既非承嫡者, 則攝行先祀, 固多窒碍, 而既不敢改題遞遷, 則未立後之前, 單獻無祝而行廟墓之祭, 恐不至於太難處也, 若以妾子攝祀爲僭, 則小宗大宗均焉, 可行於繼嗣之家者, 亦可行於繼高祖之家, 且庶兄弟嫡, 固不若弟庶兄嫡之爲順序, 然親同則一也, 曷可以不順序, 而舍期親而從小功之親乎, 至若顯辟之題, 婦人無奉祀之義, 苟非理窮勢極, 萬不獲已者, 則靡可議到也.” -答閔子亨泰鋪-

【본생부모에게는 考妣라고 칭하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라 하고 돌아가시면 ‘고비’라 하는 것은 다만 正統에게 칭할 수 있는 것이고 本生에게는 칭할 수 없습니다. 본생부모에게는 다만 백부모·숙부모라고 칭해야 할 뿐입니다. 이 의리는 程子로부터 發明된 것으로 근세에 漢湖 선생이 지킨 바가 엄격하고 정확하여 평소 쓰는 글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니, 이는 만세의 법도가 됩니다. 農巖·三淵 두 선생이 外祖父母에 대해 고비라고 칭한 것은 아마도 예의 뜻을 궁구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듯합니다. 弔狀은 한결같이 백부모·숙부모의 예를 따르는 것이 정도에 맞는데, 혹 다른 伯叔과 구별이 없을까 염려하였으므로 近齋·老淵 두 현인에게서 따로 그 양식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尤菴·陶菴 두 현인이 곧바로 伯叔狀의 禮를 씀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南塘이 ‘본생부모에게 고비라고 칭하는 것이 문제 될 것 없다’라고 한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뿐 반드시 도암과 다른 점을 세우고자 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喪事의 기강이 크게 무너져 참취복을 두 번 입지 않는 의리가 더욱 어두우니, 이 禮防을 엄히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땃땃한 도가 바르게 되면 庶民들이 바꾸어진다[經正則庶民正]’라는 것이니 흠탄해 마지않습니다. 禮라는 것은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한 것을 밝히는 것이니, 구차하게 행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降期服人’이라고 칭하는 것은 끝내 곧바로 ‘期服人’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도에 맞는 것만 못합니다. 사계 선생의 설을 따라 ‘喪人’이라 칭하여 다른 期服과 구별을 보이는 것이 아마도 禮에 어긋나지 않을 듯합니다.⁴¹⁾

【본생부모와 본생조부모에 대한 칭호 및 복】

본생부모를 백부모·숙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본래 정자와 주자의 定論⁴²⁾이

41) 『禮說』 권1, 「通禮出後」, 【本生不稱考妣】 “生曰父母, 死曰考妣, 只稱於正統, 不可稱於本生, 本生父母祇當稱伯叔父母. 斯義也發自程子, 而近世漢湖先生所守嚴確, 尋常文字亦不放過, 是爲萬世章程者也. 農、淵兩先生稱考妣於外祖父母者, 恐未究禮意而云爾也. 弔狀一遵伯叔父母例爲得正, 而或恐無別於他伯叔, 故近齋、老淵兩賢各有其式, 然未若尤、陶兩賢直用伯叔狀禮之爲不可易耳. 南塘以稱考妣於本生父母爲無害云者, 卽見未到耳, 未必欲立異陶菴而然也. 喪紀大壞, 不貳斬之義尤晦, 此防不可不嚴云者, 是所謂經正則庶民正, 欽歎欽歎. 禮者, 所以別嫌明微也, 其不可苟然審矣. 至若自稱以降期服人者, 終不如直稱期服之爲正也. 從沙翁說, 稱喪人示別於他期服, 恐不悖禮耳.” -答趙秉惠-

42) 『二程遺書』 卷2上, 「元豐己未呂與叔東見二先生語」, “既是爲人後者, 便須將所

있습니다. 그러므로 尤翁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아들은 부친의 생부를 從祖라고 해야 한다.”⁴³⁾라고 하셨으니 고조와 증조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본생의 조부는 傍親이 아니니 종조라고 칭해서는 안 되고 조부라고만 칭해야 한다.”라는 南塘의 말씀은 근거한 바가 없는 듯합니다. 본생부모에게 백부모·숙부모의 복을 입는다면 마땅히 방친의 준례를 따라야 하며, 본생의 조부에게도 降服하여 大功服을 입는다면 어찌 종조라고 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禮에는 두 명의 부친이 없으니 어찌 두 명의 조부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주고받는 書牘에서 조부라고 칭하고 손자라고 칭하는 것은 恠情이 지나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식이 될 만한 공적인 글과 사적인 글로 말하면 그 屬稱⁴⁴⁾을 바로잡는 것을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근본을 두 가지로 함에 대해서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함을 밝히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⁴⁵⁾

매산은, 양자는 일상생활에서도 본생부모를 백부모·숙부모라고 칭하고 본생조부모를 종조부모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생가에 喪事가 있을 때에 입는 服 역시 백·숙부모의 복에 준하여 입어야 하며, 다른 백·숙부모와 구분하지 않고 자신을 期服人이라고 칭하거나 또는

後者, 呼之以爲父, 以爲母. 不如是, 則不正也. 後之立疑義者, 只見『禮』不杖墓內, 有爲人後者, 爲其父母報, 便道須是稱親. 禮文, 蓋言出爲人後, 則本父母, 反呼之以爲叔爲伯也. 故須著道爲其父母, 以別之, 非謂却將本父母, 亦稱父母也.”; 『朱子語類』 권85, 「儀禮」, 「喪服經傳」, 「又問: 『先儒爭濮議事』: 曰: 『只是理會稱親. 當時蓋有引戾園事, 欲稱皇考者』: 又問: 『稱皇考是否?』 曰: 『不是.』”

43) 이 말은 宋時烈이 閔維重에게 답한 편지의 別紙에 보이는데, 그 글에 “지금 이 아들은 부친의 양부와 생부가 친형제 간이 된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부친의 생부를 종조라고 해야 한다.[今此子則其父之所後父與所生父爲同產兄弟, 故此子謂其所生祖爲從祖也.]”라고 하였다. 『宋子大全』 권63, 「答閔持叔」

44) 屬稱은 先祖에 대한 칭호를 말한다. ‘屬’은 高祖, 曾祖, 祖, 考 등과 같은 친속 관계의 호칭이고, ‘稱’은 관직이나 號 등이다.

45) 『禮說』 권1, 「通禮·出後」, 【本生父母祖父母稱號及服】 “稱本生父母以伯叔父母, 自有程朱定論, 故尤翁亦云此子謂其所生祖爲從祖也, 高曾可推而知也, 本生祖非旁親, 不可稱從祖, 只稱祖父云者, 南塘說恐無所稽也, 服本生父母, 以伯叔父母之服, 則合用旁親例, 本生祖亦降服大功, 則曷可不稱從祖乎, 禮無二考, 則詎有二祖乎, 尋常書牘稱祖稱孫, 或出於情勝, 而若係公私文字, 爲世章程者, 則正其屬稱, 不容不嚴, 所以彰二本嫌微之旨也.” -答任憲晦-

김장생의 설을 따라 喪人으로 칭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한원진은 본생부모에게 ‘고비’라고 칭해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또 본생조부만큼은 ‘조부’라는 칭호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매산은 이것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매산은 양자가 本生父나 本生兄弟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보다는 백부모·숙부모, 從兄·從弟라는 칭호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⁴⁶⁾ 특히 김원행이 행했던 예를 따라서 본생부모의 墓道文字 등에서 자신을 ‘不肖從子’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는 ‘從子’ 위에 ‘不肖’ 자를 더함으로써 여느 백·숙부모와 다름을 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禮에 어긋남 없이 본생부모에 대한 사사로운 정을 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⁷⁾

아울러 매산은, 출후한 자는 본생부모의 喪에 喪主가 되어서는 안 된

46) 『禮說』 권1, 「通禮出後」, 【出後者屬稱】 “爲人後者, 義莫嚴於正統, 而專孝不移, 故降其義於私親, 爲私親者, 亦當處以斯義, 不宜稱過房者以本生屬稱也, 所後父與所生父相對, 其子喚所後爲父, 終不成又喚所生爲父, 玆爲朱子定論, 爲子者既不敢兩皆稱父, 則爲父者亦何可兩皆稱子乎, 出後者稱本生父母以伯叔父母者, 以本不可二而統不可貳也, 其子既云從子, 而其父仍舊稱父, 則不幾於亂倫乎, 出繼所以移天也, 凡係本生屬稱, 壹遵叔姪之禮而不可變, 變則其可曰如乾坤定位乎, 以故禮家於其子過房者, 雖尋常赫跡, 皆自道伯父或叔父, 劉珥之兄珙, 以子羽之子, 出後於子翬, 故朱子代珥述珙之狀, 自稱以從弟, 漢湖老洲尤嚴斯義, 於其至親過房者, 亦自稱所後家屬稱, 近世李丈述源氏, 於其子馨秀稱仲父, 是爲不易之定理也, 本生二字, 以區別所後而云爾, 不見於禮經, 非可施於屬稱者也, 曰本生父本生兄弟, 固出於別嫌明微, 而終未若稱伯叔父從兄弟之爲正耳, 蓋情勝則失禮, 近俗混稱父子而無辨者, 非所以正名也, 名不正則言不順, 恐不容不戒也.” -答趙義卿寅永-

47) 『禮說』 권1, 「通禮出後」, 【出後者於本生親稱不肖從子】 “禮, 生曰父母, 死曰考妣, 只施於所後, 而不敢施於本生者, 所以別二親之嫌也, 自稱祇云從子, 雖尋常書牘, 亦不可去一從字, 而至若碑碣文字, 當加不肖二字於從子之上, 以示異於他伯叔父, 無嫌微之失, 而伸至愛之私也, 以故漢湖於竹醉外內行狀誌表, 咸稱不肖從子泣血謹書, 是爲可從也, 贈贊成宋公於閒靜堂集跋, 只稱從子某泣識, 泣識二字, 示別於他叔父, 而恐不若特加不肖之爲愜情禮也, 老洲吳公亦取漢翁成法, 斯乃禮家之所遵述者耳.” -答趙義卿寅永-

다고 보았다.

【출후한 자는 본생부모의 喪事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장자를 위하여 후사를 세워 승중의 조부상에 해당하는 상복을 입는 것이 보편적인 법도인데, 끊긴 후손을 이을 수가 없다면 양자로 나간 아들이 攝祀해야 할 듯하지만, 양자로 나간 사람이 도로 친생부모의 상에 상주가 되는 것은 혐의를 멀리하고 적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만약 서자가 있다면 서자의 이름으로 신주에 쓰되, 傍題⁴⁸⁾에는 “서자 아무개가 섬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國典』에도 이르기를, “적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衆자가, 중자도 후사가 없으면 妾子が 奉祀-奉祀는 입시로 대신함이다.-한다.”⁴⁹⁾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혹 오랫동안 빌려가 돌려주지 않아서 분수가 아닌 것을 넘볼까 염려된다면, 또한 기미를 막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陶菴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생부모의 상에 양자로 나간 아들이 신주를 쓰는 것은 끝내 혐의를 구별하는 의리가 아니니, 만약 부득이하여 할 경우에는 마땅히 仲父라고 칭하고 -나이가 후사가 된 아버지보다 많으면 伯父라 칭한다.- 방제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양자와 첩자의 섬사는 모두 구차한 것일 뿐이니, 이 두 가지 중에서 택하여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훗날 적통을 범할 우려가 없다면 서자가 입시로 대신하여 삼념상을 행하는 것이 절로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니, 이것이 變事를 만나 그 權道를 잃지 않는 것이 됩니다.⁵⁰⁾

48) 傍題는 신주 하단의 왼쪽에 奉祀者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예컨대 부친의 신주에는 ‘孝子 아무개’, 조부의 신주에는 ‘孝孫 아무개’라고 적는다.

49) 이 말은 『經國大典』, 「禮典·奉祀」에 보인다.

50) 『禮說』 권1, 「通禮·出後」, 【出後者不當主本生喪】 “長子無後而死, 則爲之立嗣, 服承重祖喪, 是爲常經, 而無可以繼絕, 則過房之子, 似當攝祀, 而出後者還主生親之喪, 恐非所以遠嫌重統, 若有庶子則用庶子名題主, 而傍題云庶子某攝祀恐宜, 國典亦云適長子無后則衆子, 衆子無后則妾子奉祀, -奉祀乃權攝也- 斯爲可據也, 或慮其久假不歸, 非分覬覦, 則亦宜兢兢於防微杜漸也, 陶菴曰爲本生親喪題主, 終非別嫌之義, 若不得已而爲之, 恐當稱仲父, -年長於所後父則稱伯父- 而去傍題也, 出繼子及妾子之攝祀, 皆苟而已, 而擇於斯二者而處之, 如何如何, 若無異日干統之患, 則庶子權攝行三年之喪, 自無多少窘碍, 斯爲遭變事而不失其權者也.” -答金人會寅根-

양자로 나간 사람은 오로지 所後家의 부모에 대해서만 효도를 다하여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매산은 본생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喪의 상주가 된다면 이는 ‘근본을 돌로 하는 혐의[貳本之嫌]’가 있게 되므로 불가하다고 보았다. 만약 부득이해서 그 양자가 대신 喪을 주관하게 된다면 題主할 적에 백부나 중부라고 칭하고 방제는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본생가에 서자가 있다면 그 서자에게 삼년상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보았다. 그리고 망자에게 喪을 주관할 嗣子가 없고 아우와 出系한 아들만 있으면 망자의 喪은 차라리 아우가 대신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⁵¹⁾

한편 매산은 출후에 있어서 국가의 허락, 즉 군주의 命을 매우 중시하였다. 출후를 인정해주는 공식 문서인 ‘禮曹의 빗기[禮斜]’⁵²⁾가 발급되었으면 그 출후는 이미 확정되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매산은 아무리 친형제의 아들, 즉 친조카를 자기의 양자로 삼더라도 반드시 군주에게 고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³⁾ 부자지간은 본래 하늘이 맺어주는 것인데 군주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군주의 허락만이 새로운 부자관계를 맺어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51) 『禮說』 권2, 「通禮攝祀」, 【弟與出繼子在 弟當攝兄喪】 “無嗣子主喪, 而只有弟與出系之子者, 揆以古禮親同則親者主之之文, 出系子似當主之, 而過房者既尸宗祀, 恐難攝行生家喪事, 立后前亡者之弟攝主, 以顯仲兄題主, 祝用弟告兄之辭恐宜, 不用過房子攝祀者, 亦所以別貳本之嫌也.” -答李生容斗-

52) 빗기[斜只·斜是]는 관청에서 세를 받고 증명을 해 줄 때 비스듬이 서명을 해 주는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래는 땅이나 집 등의 소유권이나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관아의 문서이다. ‘禮斜’는 禮曹에서 발급해주는 일종의 양자 허가(승인)문서이다.

53) 『禮說』 권1, 「通禮出後」, 【兄弟子告君】 “兄弟之子猶子, 然非己出也, 惟人繼絕, 惟天屬之, 人君代天理物, 故必告君而後, 與天屬同, 雖取兄弟之子爲子, 不告不爲子矣, 此大義也, 不可不嚴.” -答尹明直光演-

4. 次養·侍養에 대한 비판

차양이란 대를 이를 후사가 없어서 양자를 들였는데 그 역시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 양자와 같은 항렬의 사람을 다시 양자로 들이는 풍습이다. 매산은 차양이라는 풍습 자체에 대해서 禮經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하였다.

【차양은 禮가 아니다】

차양은 옛일에 상고할 곳이 없고, 寅平都尉⁵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사대부의 집에서 왕왕 援用하여 준례로 삼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禮는 아닙니다. 이번 沈裕之 씨의 집안에서 能順을 취하여 양자로 삼고 또 能格을 취하여 양자로 삼았으니, 능력은 바로 이른바 차양이라는 것입니다. 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한 때에 제사를 대신하는 자에 불과하니, 마땅히 그 형을 위하여 양자를 세워 전중을 해야 할 터인데, 능력이 이렇게 하지 않고 형망제급의 예를 사용한 것은 이미 正經에 어긋나며, 신주를 쓰면서 ‘孝’라고 칭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宗統을 범하는 혐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미 죽었는데, 능력의 아들이 된 자가 아버지의 命 없이 백부에게 출후하는 것은 情과 禮로 헤아려 보건대 모두 불가한 바가 있으니, 문중의 長老인 자가 능순의 후사를 세워서 그 宗事를 주관하게 하고 능력은 심유지의 介子(次子)가 되어서 스스로 別宗이 되어야 하니,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종통이 바름을 얻고 죽은 자가 모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圃隱 선생의 宗孫 道濟가 후사 없이 죽자, 그 아우 夏濟가 다음으로 대를 이었다가 또 아들 없이 죽었는데, 陶菴 선생이 단정하여 말씀하기를 “宗子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니, 이제 마땅히 도제의 양자를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혹자가 이것을 논박하기를 “次繼子인 하제가 이미 분생부모를 위하여 기년

54) 鄭齊賢(1642~1662)으로, 본관은 迎日이며 우의정 鄭維城의 손자이다. 1653년(효종4) 12월 효종의 넷째 딸 淑徽公主(1642~1696)와 혼인하여 효종의 부마로 인평위에 올랐다. 약관 21세의 나이로 요절하였고 그의 아들 鄭台一(1661~1685) 또한 모친 보다 먼저 별세하였는바, 이 때 차양을 들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복을 입었고 또 승중하여 祖母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었으니 이 사람이 宗子입니다. 도제는 비록 10년 동안 제사를 주관하였으나 이러한 두 가지 일이 없고 또 罷養한 지가 이미 오래이니, 만약 종자인 하제를 버리고 다시 이미 파양한 자를 위하여 후사를 세운다면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도암이 이를 배척하여 말씀하기를 “하제가 그 형을 대신한 것은 바로 이른바 ‘세워서 안 되는데 세운 자’이다. 頭腦가 이미 옳지 못하니, 중간의 두 가지 일을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도제는 이른바 ‘폐해서는 안 되는데 폐한 자’이니, 이미 그 잘못을 알았으면 이것을 고쳐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지금 능순은 본래 파양된 일이 없는데 그를 위해 양자를 세워서 전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죄가 없이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니, 어찌 옳겠습니까.

무릇 후사를 잇는 것을 임금에게 고하지 않았으면 父子가 될 수 없으니, 능순이 만약 禮斜를 받은 양자가 아니라면 심유지의 자식이 될 수 없고, 만약 능순과 능격이 모두 예사를 받았다면 능순이 심유지의 적자가 되니, 마땅히 그 후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능격이 이미 죽어서 양자를 주고받을 자가 모두 죽었으면 이 내용을 나라에 보고해야 하나, 또한 마땅히 능순에게 양자로 보내서는 안 되니, 마땅히 그 族子를 취하여 능순의 양자로 삼아서 심유지의 제사를 받들게 하여야 하고, 능격은 심유지의 支子가 되어야 할 뿐입니다.

형이 죽으면 중통이 아우에게 미치는 것은 殷나라의 禮이고, 자식을 놔두고 손자를 세우는 것은 周나라의 예인데, 공자께서는 은나라 사람이시니 진실로 당연히 은나라를 좋게 여기실 것이나 손자를 세우는 것을 바름으로 여기셨으니, 이것은 만대에 걸쳐 분수가 아니면서 자리를 넘보는 조짐을 끊으신 것입니다. 어찌 구차히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라건대 『陶菴集』의 「圃隱立宗議」를 취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응당 조처함에 혼미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⁵⁵⁾

55) 『禮說』 권1, 「通禮次養」, 【次養非禮】 “次養無稽于古, 始自寅平都尉, 而士大夫家往往援以爲例, 然非禮之正也, 今茲沈氏裕之家, 取能順爲子, 又取能格爲子, 能格即所云次養也, 次養者, 卽不過一時攝祀, 當爲其兄立後傳重, 而能格不此之爲, 用兄亡弟及之禮者, 已乖正經, 而其不稱孝於旁題, 則猶存干統之嫌也, 能格既死則爲能格之子者, 無父命而出後於伯父, 揆以情禮, 俱有所不可, 爲門長者更立能順之嗣, 以尸其宗事, 能格則爲裕之之介子, 自爲別宗, 如此而後, 宗統得正, 而死者俱無遺憾也, 昔圃隱先生宗孫道濟, 無後而死, 其弟夏濟次繼, 又死而無子, 陶菴先生斷之曰欲立宗子則不可不乘此機會, 以正其失, 今當爲道濟立後, 以主先祀, 或有難之者曰次繼子夏濟, 既爲本生基, 又爲承重祀

심유지라는 사람이 능순과 능격을 각각 차례로 양자로 삼았는데, 매 산은 이러한 경우 능순이 장자가 되므로 능격은 그 형을 위해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하며 형망제급의 禮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능격이 이미 죽었으면 능격의 아들이 된 자가 그 아버지의 命 없이 백부의 양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일이므로 문중의 장자가 다시 능순의 후사를 세워서 宗事를 주관하게 하고 능격은 심유지의 차자가 되어 別宗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능순과 능격이 모두 나라로부터 양자임을 인정받았다면 능순이 심유지의 적장자이고 능격은 심유지의 支子이기 때문에 은나라 때 썼던 형망제급의 예를 써서는 안되고 주나라 때 썼던 舍子立孫의 禮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산은 포은 鄭夢周 집안의 종통 문제에 대한 도암 이재의 주장이 매우 옳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정몽주의 종손 鄭鎬가 요절하고 하나 남은 그 아들도 어렸을 때 죽어서 종통이 끊어지게 되자 그 조카 鄭道濟를 입양하여 宗子로 삼았는데 정도제 또한 죽고 말았다. 나라에서는 정도제의 본생가 아우인 鄭夏濟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정도제를 과양해 본생가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하제 역시 후사 없이 죽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재는 이미 죽은 정도제를 과양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宗子로 놔두고 그의 후사를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게 해야 하며 정하제 역시 정호의 次子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현재 迎日鄭氏 포은공파 別坐公 諱 膺

母服，則是宗子也，道濟則雖十年主祀，既無此二事，且其罷繼已久，若舍宗子，而還爲已罷繼立後者，豈有是理，陶翁斥之曰夏濟之代其兄，政所謂不當立而立者，頭腦已不是，中間二事，何足論也，道濟則所謂不當廢而廢者，既知其失，則不爲之釐正乎，今茲能順則既無罷繼之舉，而不立後傳重，是無罪而見黜，其可乎，凡繼后者，不告君則不成爲父子，能順若不出禮斜則不得爲裕之子，若能順能格并出禮斜，則能順爲裕之適子，當立其后，能格已死，與受俱亡，則宜聞亦不宜出后於能順，當取其族子，爲能順后，承裕之之祀，能格爲裕之之支子已矣，兄亡弟及，殷禮也，舍子立孫，周禮也，孔子殷人也，固宜善殷，而以立孫爲正，所以絕萬世非分覬覦之漸也，豈苟然哉，幸取覽陶菴集團隱立宗議，則應不迷於裁處也。”-答朴鳳來岐壽-

善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면 정도제가 정호의 후사가 되어 宗자가 되었고 정하제는 생부 鄭錫의 뒤를 이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매산은 이제의 의론이 정확하다고 여겨서 심유지의 집안에도 이 예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즉 능격은 자신이 집안의 종통을 이어 받지 말고 능순의 후사를 세워서 그에게 전중하게 하고, 자신은 支子로 자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시양이란, 조부 항렬의 사람이 손자 항렬의 사람을 후사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하고 자신의 대를 잇게 하는 풍습으로, 이 경우 손자 항렬의 사람을 侍養子 또는 侍養孫이라고 불렀다. 매산은 이것 역시 禮經에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풍습이라고 지적하였다.

【시양은 禮가 아니다】

從孫이 從祖의 양자가 되어 뒤를 이으면 昭穆이 차례를 잃고 윤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옛날 白樂天이 姪孫(從孫)을 취하여 양자로 삼자,⁵⁷⁾ 先儒들이 바른 禮가 아니라고 비판하였으니, 예가 아닌 예는 禮家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에는 시양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老稼齋 金公이 再從祖의 시양손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⁵⁸⁾ 비록 제사를 주관하였다고는 하나 양자로 뒤를

56) 『陶菴集』 권25, 「圃隱先生立宗議」 “... 鄭錫之第一子道濟, 爲宗子鎬之後, 主祀既十年, 而不幸無子而死. 禮當爲道濟立後, 而乃改立錫之第二子夏濟爲宗嗣, 是則寅平家例也. 以道濟而言則是宗子而無罪見廢也, 以夏濟而言則是支子而殆近奪宗也. 死者固冤甚, 而生者其得自安於心乎? 今夏濟又不幸死而無子, 當此擇定宗嗣之日, 似若爲夏濟立後, 而此則實有大不可者. 夫父子天屬也, 倫紀一定, 本無可絕之義. 況道濟已死矣, 死後何罪而見絕, 已死之人, 又安有罷絕之可言哉? 所謂還歸本宗者, 爲本宗無後, 歸奉其祀也. 已死之道濟雖曰還本, 亦豈有奉祀之實乎? 道濟與夏濟, 死則同而其無後亦等耳, 欲立宗子則不可不乘此機會以正其失. 今當爲道濟立後, 俾主先祀. 至於所以處夏濟者, 則雖或以爲當如道濟罷繼還本之例, 而一之已大謬, 其可再乎? 宜仍以夏濟爲鎬之次子, 錫則更求宗族中可繼者爲後, 如此則揆以禮法與情理, 似可兩得而無憾矣. ...”

57) 白樂天이 姪孫을 취하여 양자로 삼은 일은 『古今事文類聚』 後集 권7, 「人倫部」에 보인다.

58) 老稼齋 金昌業이 再從祖의 시양손이 된 일은 漢湖 金元行이 지은 「從祖老

이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올바른 예가 아니니, 숙부에게 후사가 없으면 마땅히 숙부의 신주를 할아버지 사당에 祔하여 제사하고 그 아들 대에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의 바름을 얻음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차자로써 그 숙부의 시양자가 되게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世教가 쇠퇴하여 예를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소소한 근심이 아닙니다. 이른바 시양이란 원래 군주에게 고한 것이 아니고 또 예조의 빗기(禮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이니, 그렇다면 뒤를 이은 손자가 아닌 것인데, 뒤를 이은 손자가 아니면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든다면 구차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 일을 들을 적마다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막힙니다.⁵⁹⁾

일찍이 중국에서는 白居易가 從孫을 후사로 삼았고, 우리나라에서는 金昌業이 再從祖 金光弼의 시양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는 항렬이 어긋나기 때문에 시양으로 들어온 사람을 ‘子’로 삼을 수 없고, ‘父’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孫’으로도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매산은 시양이 禮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양이라는 풍습은 이미 당시 사회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매산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시양손이 시양조부모에 대해 양육의 은혜를 입은 점은 감안하여 제사는 지낼 수 있지만 그 자신의 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⁰⁾

稼齋公行狀에 “文正公의 아우의 아드님인 군수 휘 光弼이 후사가 없었는데, 그 後娶인 趙氏가 나라의 풍속에 따라 공을 취해 侍養孫으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文正公有弟子郡守諱光弼無嗣, 其後配趙氏, 用國俗取公, 爲侍養孫, 以奉其祀.]”라고 보인다. 문정공은 淸陰 金尙憲을 이르고 그 아우는 형조 참의를 지낸 金尙宓이며, 김광식은 韓山郡守를 지냈다.

59) 『禮說』 권1, 「通禮侍養」, 【侍養非禮】 “以從孫繼從祖, 則昭穆失序, 倫理不成, 昔白樂天取姪孫爲後, 先儒譏其非禮, 非禮之禮, 禮家之所不道也, 吾東有侍養之名, 老稼齋金公爲其再從祖侍養而尸其祀, 雖則尸祀, 非繼后也, 然亦非禮也, 叔父無後則當祔其主於祖廟而祭之, 以終其子之身, 方爲得禮之正, 不此之爲, 以其次子爲叔父侍養, 其可乎, 世教衰, 廢禮任情, 至於斯極, 非細憂也, 所謂侍養, 既非所告君, 又不出禮斜, 則非嗣孫也, 非嗣孫而立廟承祭, 不亦苟乎, 每聞斯事, 令人悶絕耳.” -答金判書基厚-

60) 『禮說』 권1, 「通禮侍養」, 【侍養子奉祀 止祭當代】 “侍養之名, 古今禮家之

이상에서 종통의 전승에 대한 매산의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자면 원칙적인 예법을 고수하는 가운데에 人情을 참작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매산은 家系の 승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자가 아닌 적장자로 종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옛법을 고려하여 차자에게 전중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 嫡庶의 구별에 있어서는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천륜 관계를 배제하지 않아서 서자가 부친과 적자인 아우의 喪을 주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서자가 집안의 적통을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族子를 양자로 들이기보다는 핏줄이 직접 닿아 있는 서자를 후사로 세우는 것이 국법에서도 허락하는 바이고 禮經에도 근거가 있는 바이며 人情에도 부합하는 바임을 들어서 그 타당함을 밝혔다. 본생가에 대해서는 그 屬稱과 예법을 所後家와 엄격히 구별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다만 인정을 참작하여 본생부모의 묘도문자 등에서는 자신을 ‘不肖從子’라고 칭하여 여느 백·숙부모와 다름을 보이면서도 본생부모에 대한 사사로운 정을 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차양과 시양에 대해서는 세속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법에 없는 것임을 밝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시양은 길러준 인정을 고려하여 시양손의 당대에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곧 매산은 예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 항상 ‘經’이라는 원칙을 우선하면서 人情과 實情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종통 전승에 관한 예설 저변에 일관되게 깔려 있다고 하겠다.

所不言，而近俗或有之，然非禮也，然既爲侍養，則當服侍養祖父母如養父母，而服侍養孫如養子耶？祭止幾世耶？恐當止侍養子之身，以報鞠育之恩而已，若上祀高曾則與爲人後而奉所後祀者無異，所以要止祭當代也，被人謀及，如是爲對，而言固無稽，未敢自信，伏幸明教。”-答老洲吳丈-

IV. 結論

일에는 원칙적인 예법인 經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전자를 常이라 하고 후자를 變이라고 한다. 예의 적용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變의 상황이다. 變의 상황에서 적용하는 예를 ‘變禮’라고 하는데, 이는 經·常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설』 「통례」를 통해서 본 매산의 變禮 역시 그러하다. 매산은 종통의 전승에 있어서 적장자로 계통을 이어나가야 함과 적서를 엄격히 구별해야 함과 본생가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함과 차양과 시양이 불가함을 등을 주장하여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인 예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차자의 전중과 서자의 승적을 인정하고 본생부모의 묘도문자 등의 호칭에 ‘불초’라는 글자를 더 넣는 것과 시양조부모에 대한 시양손 당대의 제사를 허용하고 있다. 곧 매산은 원칙적인 예법을 고수하는 가운데에 人情을 참작하여 ‘變通’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는 經과 常의 범주 안에서 알맞은 길을 찾은 것이라고 하겠다.

향후 매산 예설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提言으로 마무리를 갈음하고자 한다. 본고는 『예설』의 「통례」라는 지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매산 예설의 특징을 살펴 본 것으로, 試論에 불과하며 매산의 예설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었다고 하겠다. 매산의 예설은 관·혼·상·제 및 國禮·國哀 등 예법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바, 향후 매산의 예설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치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바로 초간본 『매산집』과 필사본 『매산집』(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6-가1088) 및 『梅山續集』(奎5575-v.1-5)의 원문을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현재 『예설』에 실려 있는 편지들 중에는 초간본 『매산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또한 필사본 매산집은 不分卷 224책의 巨帙로서 초간본 『매산집』에 들어있지 않는 글들이 존재하며 중복된 글들도 있는데 그 내용에 출입이 있다.⁶¹⁾ 『매산속집』 역시 초간본 『매산집』에는 실려 있지 않은 편지가 다량으로 실려 있어서 매산의 교유 관계 및 그의 평소 생각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의미한 자료이다.⁶²⁾ 여기에다가 『梅山先生書贈編』(奎6942-v.1-2), 『梅山雜識』(奎5953-v.1-2) 등의 자료를 아울러서 서로 비교·대조하여 『매산집』을 定本化하는 작업이 예설 연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산의 학통이 이어져 있는 박윤원의 『근재예설』, 임헌희의 『전재선생예설』, 전우의 『간재선생예설』에 있어서도 예설이 어떻게 전승되었으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재선생예설』과 『간재선생예설』의 전체적인 체제는 『예설』의 체제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매산의 예설이 전우까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61) 李恩周, 「筆寫本『梅山集』의 傳記 資料的 價値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19-25.

62) 필자가 實査해 본 바, 현재 규장각에는 5책으로 구성된 筆寫本 『梅山續集』(奎5575-v.1-5)이 있는데, 정확한 필사 시기 및 필사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첫 번째 권 겉표지에 ‘梅山續集’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로 편지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答書가 많으며 초간본 『매산집』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 또한 곳곳에 ‘重出’, ‘續’, ‘恐當刪’, ‘勾乙(「」)’ 등이 표시되어 있고, 상단에는 간략한 頭註 형식의 글이 표기 되어 있는데 ‘喪中改葬 喪中弔哭’, ‘國恤廢練祥’, ‘大闡’, ‘喪中講禮仕學’, ‘指引’, ‘安貧’ 등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는 종류와 ‘葬畢之葬字 疑喪字’처럼 내용을 교정하는 종류가 있다. 아마도 제자들이 정식 문집을 간행하고서 새로 발견되는 매산의 글들을 수집해 정리하다가 끝내는 간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參考 文獻>

- 權純命 編, 『艮齋先生禮說』(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1234-87-1-5)
- 金長生 著, 『沙溪全書』(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한古朝46-가920)
- 宋時烈 著,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 108~116집)
- 李 緯 著, 『陶菴集』(한국문집총간 194~195집)
- 李鎮玉 編, 『梅山先生禮說』, 韓國禮學叢書(影印本 77~78), 圖書出版 民族文化, 2011.
- 任憲晦 著, 『鼓山集』(한국문집총간 314집)
- 田 愚 編, 『全齋先生禮說』(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우촌古159-29)
- _____ 著, 『艮齋集』(한국문집총간 332~336집)
- 洪直弼 著, 『梅山集』(한국문집총간 295~296집)
- 丘 濬 輯, 『文公家禮儀節』, 學民文化社(影印本), 2013.
- 程顥·程頤 著, 『二程集(全4冊)』, 中華書局, 1981.
- _____ 著, 『二程遺書』, 上海古籍出版社, 2000.
- 陳 澧 撰, 『禮記集說』, 世界書局(銅版), 民國25(1936).
- 胡 廣 等 撰, 『性理大全書』, 四庫全書影印本,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 成百曉 譯註, 『(譯註)近思錄集解 1·2·3』, 傳統文化研究會, 2007.
- 楊天宇 譯註, 『儀禮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4.
- 彭 林 譯註, 『儀禮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7.
- _____ 整理, 『儀禮注疏 上·下(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金允貞, 「18세기 禮學 연구-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李恩周, 「筆寫本 『梅山集』 의 傳記 資料의 價値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鄭吉連, 「梅山 洪直弼의 禮說研究」, 慶星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8.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2017.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2017.
-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2017.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17.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2017.

Abstract

*Maesan(梅山) Hong Jik-pil(洪直弼)'s Theories on Rites:
his understanding of lineage system appeared in his Rites in
general(通禮) in Theories on Rites by master
Maesan(梅山先生禮說) / Lee Young-june**

This article surveys Hong Jikpil's understanding of lineage system through his 梅山先生禮說(*Theories on Rites by master Maesan*) compiled by Yi Jin-ok(李鎮玉), especially focused on the items of 宗法, 出後, 次養, 侍養, 攝祀 of its 通禮(*Rites in general*). In Joseon dynasty which adopted Neo-Confucianism as a national policy, it was lineage system which maintained public order rightly and it was same to Hong Jikpil.

Hong strongly kept the principle of succession by the eldest legitimate son(嫡長子), however he also allowed succession by the second legitimate son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accounting the old rituals. He maintained the principle of the strict distinction between legitimate and illegitimate lines of descent, but he, on the other hand, also admitted that an illegitimate son could hold a funeral of his father and legitimate sons which meant that he did not break moral laws of family relationships. He also regarded succession by an illegitimate son as appropriate rather than adopting a relative who had no blood relationship in respect that first, it was permitted by national law; second, it was based on Classic of Rites; and third, it was appropriate to human feelings.

As to the title and rituals for the original family of adopted son(本生家), he kept the principle of rigid distinction between the original family and the family he adopted(所後家). But he asserted that one should share one's natural feeling to one's original parents that he called himself as an 'unworthy' nephew in the epitaph of his original parents which show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riginal parents who as a result had become an uncle and aunt, and the ordinary uncle and aunt. As to the second adopted son(次養子) and an adopted son regardless of succession(侍養子), he insisted that they are in principle illegal according to ancient ritual though they were widely accepted an

* Researcher of Haedong Institute of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y. / swimhero@hanmail.net

d conducted among people. He added however, 侍養子 could hold a memorial service for his adoptive parents. He believed that this would be appropriate to human feelings.

It is presumable that Hong gave priority to the principle of JIng(經) while considering human feelings and the realistic situation when a judgement on theories on Rites was needed. He on the one hand strongly kept the ideal theories on Rites, and on the other hand suggested the way of 變通(accommodating to circumstances) which was the result of consideration of human feelings. It is assumable that this standpoint which compromises the ideal with the reality underlies his understanding of lineage system.

【Key words】 Hong Jik-pil(洪直弼), Yi Jin-ok(李鎭玉), Theories on Rites by master Maesan(梅山先生禮說), lineage system(宗統), Accommodating to circumstances(變通), the eldest legitimate son(嫡長子), the original family of adopted son(本生家), the second adopted son(次養子), an adopted son regardless of succession(侍養子)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16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